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08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권영세 · 김재섭 · 서천호
윤재옥 · 김기웅 · 이인선
최수진 · 조정훈 · 신성범
최보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 · 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재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9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 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 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 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 <u>026년 12월 31일까지</u>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 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 무면제익”이라 한다)은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 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 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 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 입한다.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 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 ----- -----2 <u>029년 12월 31일</u> ----- ----- ----- ----- -----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